

대통령령 제 호

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5(대출금리의 산정)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: 100분의 50
2. 제1호에 따른 대출이 아닌 경우 : 100분의 0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5(대출금리의 산정) 법</u> <u>제30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으</u> <u>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</u> <u>호의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</u> <u>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</u> <u>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</u> <u>우 : 100분의 50</u> <u>2. 제1호에 따른 대출이 아닌 경</u> <u>우 : 100분의 0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은행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82